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건축과-16718

시행일 (2024. 6. 4.)

수신 재영프라자 빌딩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 귀하 (우51004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26 (대청동))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재영프라자 빌딩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26																			
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귀 관리단에서 소유(점유)하는 김해시 대청동 315-2번지상의 건축물 E.P.S 실내 전층 방화구획 바닥을 관통하는 전선 주변 채움재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음.																				
	<table><thead><tr><th colspan="5">위반건축물 현황</th><th rowspan="2">관련법 조항</th></tr><tr><th>위치</th><th>구분</th><th>층수</th><th>위반내용</th><th>면적(㎡)</th></tr></thead><tbody><tr><td>김해시 대청동 315-2</td><td>①</td><td>전층</td><td>E.P.S실내 전층 방화구획 바닥을 관통하는 전선 주변 채움재는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내화성능이 확인된 건축자재로 재시공 필요함</td><td>13,662.58</td></tr></tbody></table>					위반건축물 현황					관련법 조항	위치	구분	층수	위반내용	면적(㎡)	김해시 대청동 315-2	①	전층	E.P.S실내 전층 방화구획 바닥을 관통하는 전선 주변 채움재는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내화성능이 확인된 건축자재로 재시공 필요함	13,662.58
위반건축물 현황					관련법 조항																
위치	구분	층수	위반내용	면적(㎡)																	
김해시 대청동 315-2	①	전층	E.P.S실내 전층 방화구획 바닥을 관통하는 전선 주변 채움재는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내화성능이 확인된 건축자재로 재시공 필요함	13,662.58																	
4.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위 “3호”의 사실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10조(벌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조문내용 별첨																				
6. 의견제출	제	기 관 명	김해시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김동규														
	출	주 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번호	055-330-2884														
	처	전자우편 주 소	oper7444@korea.kr			모사전송	055-722-0903														
	제출기한		2024년 06월 20일까지																		

※ 행정안내사항

① 의견 제출기한 경과 후 시정명령 처분 시 위반건축물 현황이 세정과 및 재산소득세과로 통보되어

②「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건축물(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 포함)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 해 시



김해시 3대 메가 이벤트 "2024 전국(장애인)체전"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